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11. 6. 30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6월 10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11년 6월 30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정 호

### 가. 개정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창의롭고 활기찬 조직을 목표로 기능직 및 실무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여 하위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렬·직급별 정원의 조정을 통한 승진을 실시하여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보상으로 역동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제출된 것임

### 나. 주요개정내용

- (1) 마포구의 총 정원은 정무직 1명을 포함하여 1,260명으로

일반직 76%이상 977명 기능직 22%이내 267명, 별정직 2% 이내 1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음

(2) 안 별표 2중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에서는 6급 현행 21% 이내를 22% 이내로 1%를 상향 조정하고 현행 8급 31% 이내 와 9급 9% 이상을 각 각 0.5%를 하향 조정하여 하위직급을 축소하고 상위직급을 증원

(3) 안 별표 2중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에서는 현행 7급 11% 이내를 17% 이내로 6%를, 현행 8급 31% 이내를 35% 이내로 4%를 각 각 상향 조정하였고 현행 10급은 22% 이상을 12% 이상으로 10%를 하향 조정하여 하위직급을 축소하고 상위직급을 증원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승진적체로 침체되고 소외된 하위직급의 사기 증진과 열심히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하는 체계 확립을 위한 2011년도 마포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구청장방침에 따라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도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음

다만 기능직 또는 별정직 중에는 해당직급 장기근무자가 많이 있어 승진적체에 따른 불만과 사기저하가 예상됨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더욱 더

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직급의 장기 근속자에 해당되나 상위직급의 정원이 없어 승진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직렬별, 직급별 정원에 대한 균형적인 안배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